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공개강좌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혁신본부), 02-970-6791

제정 2012. 9. 1.

타규정개정 2015. 6. 5.

개정 2020. 1. 23.

타규정개정 2021. 9. 1.

학칙개정 2021.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1조에 따라 대학원에 설치하는 공개강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개정 2021. 10. 1.)

제2조(정의) 공개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년 이내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강좌주임교수) 강좌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는 운영학과 교원 중에서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 (개정2021. 9. 1.)

제4조(출강교수) 출강교수는 교내 교원과 교원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2021. 9.

1.)

- 제5조(강좌운영위원회) ①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좌운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위원은 운영학과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3명 이내로 한다. (개정2021. 9. 1.)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공개강좌의 개설)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 또는 학과 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 1. 대학원 주임교수
- 2.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2021. 9. 1.)
- 제7조(개설승인 및 평가) ① 강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강좌개시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학원 공개강좌 개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개설된 강좌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학 원 공개강좌 변경승인신청서를 강좌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총장은 개설 중인 강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총장은 전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성과가 저조한 강좌는 폐지한다.

- 제8조(입학시기 및 수강기간) 입학 시기는 3월 또는 9월로 하고, 수강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한다.
- 제9조(수강인원) 강좌의 매 학기 등록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 수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개설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혁신본부장이 승인하다. (개정2021, 9, 1.)
- 제11조(성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이수(P), 미이수(F)로 한다.
- 제12조(수료) ① 강좌를 수료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공직자가 강좌에 입학하거나 수료하는 경우,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 제13조(장학금 지급) ① 강좌 수강생에게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4조(강좌 운영 공개) 총장은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강좌 관련 규정
- 2. 강좌 수강료 책정
- 3. 강좌 장학금 운영 현황
- 4. 공개강좌 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5조(감사) 총장은 강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감 사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 제16조(재정) ① 강좌 개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대학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② 모든 강좌에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다만 소규모 강좌의 경우 대학 원혁신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2~3개 강좌에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
- ③ 대학원에 개설된 강좌의 회계 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직원은 대학원혁신본부 소속으로 한다. (개정2021. 9. 1.)
- ④ 주임교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혁신본부장이따로 정한다. (개정2021. 9. 1.)

부칙(제139호, 201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공개강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공개강좌 규정(규정 제58호)은 폐지하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설된 대학원 공개강좌는 2014년 2월말까지 종전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공개강좌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83호, 2015. 6. 5.)

(대학회계 신설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1호, 2020. 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32호, 2021. 9. 1.> (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학칙개정 2021. 10. 1.)

대학원 공개강좌 개설승인신청서

운 영 학 과		개 설 년 월	20 년	월		
개설책임교수		수 강 기 간	6개월 /	1년		
강 좌 명 칭						
개 설 목 적						
강 좌 과 목		강 의 시 간				
강 의 장 소		모 집 정 원				
수 강 료		수 료 기 준				
수강생의자격						
선 발 기 준						
※ 붙임 : 공개강좌 운영계획서(교육과정 포함) 1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1조에 따라 대학원 공개강좌 개설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개설책임교수	: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 (학칙개정 2021. 10. 1.)

대학원 공개강좌 변경승인신청서

운영학과	7	개설책임교수	
강좌명칭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붙임 : 공개강좌 운영(변경)계획서 1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공개강좌 운영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원 공개강좌를 변경 개설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개설책임교수: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1조에 따라 개설된

○○과정 제 기에서 정해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위의 인정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이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1조에 따라 개설된

○○과정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 ○ ○